

○ **근거** :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(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-1093호) 제8조

○ **심의의결 유형**

1. **원안의결** :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
2. **조건부의결** :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
3. **재심의결** :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(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)
4. **부결(반려)** :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
5. **보완의결** :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(의견)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. 이 경우에는 심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6. **보류의결** :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. 이 경우에는 심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7. **조건부(보고)의결** :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